

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에 대한 13. 엠블럼 제도 시행계획

정보통신부, 1999. 5.

1. 목적

-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을 갖춘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및 업무용건물의 구내통신설비에 대해 인증마크(엠블럼)를 부여하여 초고속정보통신의 인식확산 및 활성화 촉진

2. 필요성

-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건물에 대해 인증제도 실시하여 건물주 및 입주자에 대한 초고속 통신망의 인식확산과 지식정보화 사회 조기 정착 도모
- 구내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촉진하여 초고속정보통신의 병목현상해소 및 보편적 서비스 기반조성
- 고속인터넷, SOHO, 재택근무 등의 초고속정보통신 수요 급증에 대응
- 기존 구내통신설비의 노후화와 수용한계 등으로 전체 통신장애의 70%이상을 구내 통신 부분에서 발생

3. 추진방침

- 등급 인증을 희망하는 신청자에 한해 심사 후 등급 부여
-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용 및 업무용 건물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실시 후 결과를 평

가·보완하여 단계적으로 확산

4. 추진방안

- 대상범위
 - 주거용 : 아파트 및 공동주택 단지
 - 업무용 :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,000㎡ 이상인 건물
- 인증구분 : 3개 등급
- 엠블럼 부착 위치 : 건축주 자율로 결정하여 부착(건물의 정문, 출입구 등)
- 신청자 : 건축물 소유주, 건축업자,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통신사업자
- 신청서 접수 및 심사
 - 시행기관 : 관할 체신청
 - 신청서 접수 : 구내통신설비의 완공시 또는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청자의 요청에 의거 접수
 - ※ 다만, 분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인증 등급을 사전에 예고 할 경우에는 구내 통신시설의 완공전에도 예비 신청가능
 - 심사 기간
 - 신축건물 : 사용전 검사와 병행 실시(신청자 희망시)
 - 기존건물 : 접수후 20일 이내 실시
- 등급결정 심사내용
 - 구내통신의 배선케이블, 공신실 크기, 배관 등의 규격, 성능, 규모 등
 - 설비관리 및 운용환경 등 정보통신서비스에 필요한 사항
 - ※ 기술기준 규칙 및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술표준 등에 부합
- 등급부여 : 해당 인증등급 기준에 전부분 만족시 부여
 - 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해당 엠블럼 및 등급표시 동판 부여
- 구내통신설비 인증등급 기준(안) : 붙임

[붙임]

구내통신설비 인증등급 기준(안)

1. 심사기준의 설정

가. 심사기준 적용근거

- “구내통신선로설비의 기술표준”을 적용하여 심사기준 제정
- 국내 기술표준에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표준 등을 준용

나. 심사기준 고려사항

- 실제 사용자의 통신 환경을 나타낼 수 있는 구내배선의 “링크성능기준” 반영
 - 양호한 케이블과 접속자재를 설치하여도 배선거리 및 방식에 따라 통신 품질이 상이
 - 업무용 기술표준 및 국제표준 등에 규정된 링크성능기준 적용
- 세계적인 배선케이블 기술발전 및 사용추세를 감안하여 케이블등급의 심사기준 제정
- 업무용 건물의 통신실 확보면적은 기술기준을 준용하며, 집중구내 통신실은 건축물 규모·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필요 공간을 산출 적용
- 수평배선은 광케이블과 동선(Cat5 Enhanced 이상)을 병행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반영
- 인출구 및 구내단자함 등 접속기자재 성능이 구내통신배선의 성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에 포함

2. 심사기준

가. 업무용 건물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비 고
<input type="checkbox"/> 배선설비 · 배선방식 · 배선케이블 등급	성형배선	좌동	좌동	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비 고
- 구내간선계	광섬유케이블	Cat5E 이상 또는 광케이블	Cat3 이상	
- 건물간선계	광섬유케이블	Cat5E 이상 또는 광케이블	Cat3 이상	
- 수평배선계	광섬유케이블	Cat5E 이상으로	Cat3 이상 2회선	10m' 당
· 접속자재등급	2Core 및 Cat5E 이상 2회선 배선케이블등급과 동등 이상	2회선 좌동	좌동	
· 배선반 등의 예비회선 확보	필요한 회선수의 30%이상의 예비회선 수용공간 확보	필요한 회선수의 20%이상의 예비회선 수용공간 확보	필요한 회선수의 10%이상의 예비회선 수용공간 확보	10m' 당
· 단위실(10m')당 인출구 수	3개 이상 (8핀 모듈러잭 2개 및 광케이블 잭 1개)	2개 이상 (8핀 모듈러잭)	좌동	
<input type="checkbox"/> 배관설비				
· 배관시설 구조	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	좌동	좌동	
· 배관시설의 종류 및 규격	관련 기술표준에 적합할 것	좌동	좌동	
· 예비관로시설	3공 이상의 예비공 또는 동등이상(다트시공)의 예비시설 확보	2공 이상의 예비공 또는 동등이상(다트시공)의 예비시설 확보	1공 이상의 예비공 또는 동등이상(다트시공)의 예비시설 확보	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비 고
<input type="checkbox"/> 구내통신실 · 집중 구내통신설 확보 · 층별 구내통신실 확보 · 환경관리	외선과의 접속이 용이한 지상층에 각종 통신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공간 확보	좌동	외선과의 접속이 용이한 지상층 또는 지하층에 각종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공간 확보	MDF 및 통신사업자가 설치할 통신장비 설치 공간
	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통신실에 상온/상습 관리 및 시건장치 설치	좌동	좌동	
<input type="checkbox"/> 구내선로의 링크성능	CLASS D(100MHz) 이상	좌동	CLASS C(16MHz) 이상	
<input type="checkbox"/> 구내통신시설 도면 관리상태	관리	관리	관리	배선, 배관 등 도면

나. 주거용 건물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비 고
<input type="checkbox"/> 배선설비 · 배선구조 · 배선케이블등급 - 구내간선계	성형배선	좌동	좌동	
	광섬유케이블	Cat5 이상	Cat3 이상	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비 고
- 건물간선계	Cat5 이상	Cat5 이상	Cat3 이상	세대당
- 수평배선계	Cat5 이상 3회선	Cat3 이상으로	CPEV 이상	
· 접속자재등급	배선케이블등급과 동등이상	2회선 좌동	2회선 좌동	
· 세대별 단자합 설치 유무	유	유	유	
· 배선반 등의 예비회선 확보	필요한 회선수의 20% 이상의 예비회선 수용공간 확보	필요한 회선수의 20% 이상의 예비회선 수용공간 확보	필요한 회선수의 10% 이상의 예비회선 수용공간 확보	세대당
· 세대별 인출구 수				4구단형은
- 인출구 형태	8핀 모듈러잭	좌동	8핀 모듈러잭 또는 4단자형	2001년12월31일까지 적용
-인출구 수	각 실별 2개이상	각실별 1개이상	각 실별 1개이상	
<input type="checkbox"/> 배관설비				
· 배관시설 구조	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	좌동	좌동	
· 배관시설의 종류 및 규격	관련 기술표준에 적합할 것	좌동		
· 예비관로시설	2공이상의 예비공 또는 동등이상의 예비시설 확보	좌동	1공이상의 예비공 또는 동등이상의 예비시설 확보	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비 고
<input type="checkbox"/> 구내통신설 · 집중 구내통신설 확보 - 500세대 이하 - 1,000 " " - 1,500 " " - 2,000 " " - 2001세대 이상 · 환경관리	외선과이 접속이 용이한 지상층에 각종 통신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15m' 이상 20m' 이상 25m' 이상 30m' 이상 30m' 이상 적정 규모 통신실에 상온/상 습 관리 및 시건장 치 설치	좌동 10m' 이상 15m' 이상 20m' 이상 25m' 이상 25m' 이상 적정 규모 좌동	외선과이 접속이 용이한 지상층에 각종 통신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10m' 이상 15m' 이상 20m' 이상 25m' 이상 25m' 이상 적정 규모 시건장치 설치	MDV 및 통신사업자 가 설치할 통신 장비 설치공간
<input type="checkbox"/> 구내선로의 링 크성능	CLASS D(100MHz) 이상	CLASS D(16MHz) 이상	CLASS D(1MHz) 이상	
<input type="checkbox"/> 구내통신시설 도면 관리상태	관리	관리	관리	배선, 배관 등 도면